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특약」(구 외환은행)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약은 고객과 (주)하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의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이상 1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합니다.

제4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이율적용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이율결정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이율결정일은 가입일 및 이율변동주기 도래일(가입일 해당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율결정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게시한 고시이율을 적용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의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③ "이율변동주기"라 함은 예금주가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말하며, 이 예금의 이율변동주기는 1년으로 합니다.

제7조 이자의 지급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6조에서 정한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8조 중도해지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가입일부터 최종 이율결정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예금의 매 이율결정일에 적용된 고시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최종 이율결정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조 만기후이율

예금주가 만기일이후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 일부해지

-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 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3회 범위내에서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일부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 8조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부해지 후 예금의 잔액은 일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1조 증여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증여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은행과 협약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증여신고를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 ② 증여신고대행 요청은 해당 증여신고건이 법정신고기한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금 신규 가입시 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입하신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거래제한

이 예금의 갱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칙(제정)

이 특약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